

광주지방법원 2021. 2. 2 선고 2019가단53423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2021. 1. 19.

판결 선고2021. 2. 2.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/13 지분에 관하여 2019. 2. 5.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D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/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9. 7. 26. 접수 제1306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6. 12. 20.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차전21703호로 E 주식회사(이하 'E'라 한다)로부터 순차 양수받은 D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및 카드론 채권(이하 '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'이라 한다)의 지급을 청구하여, 2016. 12. 22. 39,566,107원 및 이 중 21,932,43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(이하 '이 사건 지급명령'이라 한다)을 받았고, 2016. 12. 28. 위 지급명령이 D에게 송달되었으며, D이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7. 1. 12.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.

나. D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2989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. D은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이 순차 양도되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,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상사소멸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. 그러나 D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이 순차 양도되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, D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2020. 11. 3.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, 이에 D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.

다. D의 아버지인 F는 2019. 2. 5. 사망하였고,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G와 자녀인 H, I, J, D, 피고가 있어, 그 법정상속분은 G가 3/13, H, I, J, D, 피고가 각 2/13이다. 위 상속인들은 2019. 2. 5.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 중 망 F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1/2 지분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'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'라 한다)를 하였고, 피고는 2019. 7. 26. 이 사건 부동산 중 1/2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피고는 E의 D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이 순차 양도되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통지를

D이 받은 사실이 없고,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상사소멸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하여,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룬다.

위 기초사실,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E는 2003. 6.경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K에 양도한 사실, L 유한회사는 위 채권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한 사실, L 유한회사는 2008. 3. 31. M 주식회사에, M 주식회사는 2011. 12. 28. 주식회사 N에, 주식회사 N는 2012. 8. 29. 원고에게 순차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, 각 양도인¹⁾은 위와 같은 양도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 통지서를 당시 D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, 2018. 6. 30. 원고의 직원과 D 사이의 통화에서 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고 원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일부 변제와 채무면제와 관련하여 논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D은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순차양도와 관련하여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.

또한 같은 증거에 의하면, 원고가 D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3회에 걸쳐 대한민국(우정사업본부)으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았고, 위와 같이 추심받은 돈을 원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이자 변제에 충당한 사실 및 D이 이를 알면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그렇다면 D은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.

나. 사해행위

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망 F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1/2 지분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2/13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D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, D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1/13(= 망 F의 1/2 지분 × D의 법정상속분 2/13) 지분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/13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

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박남준

별지

1) 다만, E에서 L 유한회사로의 양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양수인인 L 유한회사가 통지하였다.